

01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등록신청

① 대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②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③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02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연금

- ①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②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5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3만 2,510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	43만 2,510원 · 부가급여 43만 2,51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42만 2,510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8만 원	8만원 · 부가급여 8만원
차상위 초과	37만 2,510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3만 원	5만원 · 부가급여 5만원

* 차상위계층: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필요)

-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1~6618)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6957)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03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아동) 수당

- ① 대상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전3~6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만 18세이상 장애인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경증	중증	경증
기초(생계,의료)	월 6만 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기초(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월 3만 원	월 9만 원	월 3만 원

-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1~6618)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6957)

04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도비 장애(아동) 수당

- 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 ② 내용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만 원(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 ③ 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신청 → 시군구통합관리팀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6957)

05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① 대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②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06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①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

② 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시간 제공
※ 월~토요일(9시~21시)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07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①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②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031-239-6393)

08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 ①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탈락자 중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② 내용
 -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 가사, 개인활동 서비스 지원
 - 운영시간: 생활지원 월48시간 이내,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육아지원 월80시간 이내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09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①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
 -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② 내용
 - 기본형 과 확장형 2가지 유형중 이용자 선택 제공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10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 ① 대상
 - 만18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
- ② 내용
 -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활동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일상 기본활동, 자기주장 프로그램 등)
 - 운영시간: 10시~16시(1일 6시간), 주5일(월~금)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11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①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 ② 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③ 방법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2-2615-9647)
 - 교육부(☎02-6222-6060)

12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② 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③ 방법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 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④ 문의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13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일자리 지원

① 대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② 내용

구분	사업명	모집시기	지원 인원
10개	계		230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행정도우미)	11월	46
	시간제(행정도우미)		20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월	90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월	14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관리사	12월	6
광명시 자체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4월	42
	광명발달장애인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수행기관지정	10
	시각장애인 안마사안마서비스사업	수행기관지정	2

③ 방법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680-2244)

14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① 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만23세 이하의 발달장애인 대상)

② 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형훈련센터(6개소), 디지털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 수당	월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대상 월 28만 4,000원)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원 지급
식비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③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④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15

일자리가 필요할 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①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②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③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 ④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16

일자리가 필요할 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① 대상
 - 만15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 ② 내용
 - 미취업장애인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10만 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1회 1만8천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 ③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 ④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17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① 대상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높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중증장애인 100%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근로 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③ 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④ 문의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02-2616-3813/ 목감로 120, 1층)
- 광명시립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070-4510-7613/ 목감로 120, 장애인복지타운 3층)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680-2596)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어

① 대상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 3,048,887원) 초과 100%
(4인 기준 / 6,097,773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내용

-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상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① 대상
 - 장애인
- ② 내용
 - 권익옹호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 동료상담(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개인별 자립지원(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기획 및 관리, 체험홈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보장구 지원, 문화 여가 활동 등)
- ③ 방법
 -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서비스 신청
- ④ 문의
 -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97-7008)

20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 ① 대상
 - 장애인
- ② 내용
 -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며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남성체험홈/여성체험홈)
 - 훈련 내용
 -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자기관리, 취업활동 등
 - 자립생활기술훈련, 집단자립생활 기술훈련, 문화체험
 - 탈시설 전환사업, 단기체험 프로그램
- ③ 방법
 -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서비스 신청
- ④ 문의
 -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97-7008)

21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 ① 대상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 준 적용하지 않음)
 -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지급
 - 제외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 복귀자
- ② 내용
 - 거주비용(임대 보증금 등)
 - 거주 공간 편의시설 설치
 - 생활용품 구입
 - 기타 자립생활 정착에 필요한 자금
- ③ 방법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추천
- ④ 문의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680-2596)

22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근로지원인

- ① 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② 내용
 - 지원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③ 방법
 -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 ④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23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의료비 지원

① 대상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②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③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등 제출(자격 확인만으로 지원)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24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① 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6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② 내용

- 경기도에서 수술비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1인당 매년 3,000천원 이내)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사업팀 검토 → 재활치료비 지급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25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①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②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③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④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26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①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②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팔·다리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목발, 지팡이, 돋보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등

③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④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 ☎02-2680-2264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①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②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리더,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심장 장애인	육창예방 방식, 육창예방 매트리스
청각 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 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머그컵 등 5개 품목), 기립 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뇌병변 장애인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02-2680-6601~6618)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680-2237)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28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

①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만24세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② 내용

-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대여
- 서비스가격(바우처/본인)
 - 12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108/12천원
 - 중위소득 140%이하 : 96/24천원
 - 중위소득 140%초과 : 84/36천원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상담 · 접수 및 자격확인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1~6618)
-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02-2680-2028)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가능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불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만 지원 가능

② 내용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4만 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기준비용: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 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 발급비용 본인 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급여지급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1~6618)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6957)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①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등록 아동
 - ※ 만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 영역 검사 결과지 제출로 이용 가능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 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②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 장애아동 수요에 따른 다양한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물리·작업치료 제외)
-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 부과

소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 원	월 25만 원	무료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 원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 원	월 4만 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9만 원	월 6만 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 원	월 8만 원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접수 및 자격 확인

④ 문의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수행기관
 - GM연세언어청각발달연구소(☎02-2683-7536)
 - 하안종합사회복지관(☎02-894-0720)
 - 개명MBI센터(☎02-2616-5618)
 - 톡톡톡언어심리발달센터 철산점(☎02-2682-8575)
 - 아동청소년발달센터 봄(☎070-8201-1275)
 - 해피트리 아동발달센터(☎02-897-7275)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02-2616-3700)
 -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소하점)(☎02-898-7288)
 - 광명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02-898-9962)
 - 톡톡톡언어심리발달센터 하안점(☎02-898-8579)
 - 이화아동발달연구소(☎02-2060-7752)
 - 아이플러스 아이발달연구소(☎02-6166-7579)
 -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02-899-7579)
 - 포낙보청기 광명센터(☎02-2066-9990)
 - 두드림심리지원센터(☎02-2688-0188)
 - 언어병리학연구소 수(☎02-6676-4736)
 - 철산종합사회복지관(☎02-2617-0410)
 - 중앙 마인드맘 언어감통심리발달센터(☎02-3147-4229)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31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 ① 대상
-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의 자녀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② 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수화교육
 -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 부과)

소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 원	월 22만 원	무료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 원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 원	월 4만 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 원	월 6만 원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접수 및 자격 확인

- ④ 문의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02-2616-3700)
 - 광명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02-898-9962)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 ① **대상**
 -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②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상담·접수 및 자격확인
- ④ **문의**
 - 개명 MBI센터(☎02-2616-5618)
 - 이화아동발달연구소(☎02-2060-7752)
 - 톡톡톡언어리발달센터 철산점(☎02-2682-8575)

33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① 대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 무관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및 생활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조사 후 심의

②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지원급여: 1~15구간으로 구분하여 60시간(월1,000천원)~최대 480시간(월7,980천원)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70%~180%초과: 38,800원-200,200원
 - 서비스 단가: 시간 당 16,620원(활동보조 기준)

구분	시간당 금액
평 일	16,620원
심야(밤 22시 이후 6시 이전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	24,930원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④ 문의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02-2616-3700)
-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02-2612-0453)
- (사)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02-802-6009)
- (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명시지회(☎02-899-994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34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 ①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②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 ④ 문의
 - LH마이홈(☎1600-1004)

35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① 대상
 - 우선입소대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② 내용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 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③ 방법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가능 여부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④ 문의
 - 장애인 거주시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680-2596)

36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①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②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후견심판청구 비용: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 원(월 최대 50만 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가족후견인)의 경우는 비용 미지원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548-139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7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무료 법률 구조제도

- ①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62만2,216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 ②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부담)
- ③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④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38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①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② 내용
 - 중증장애인 가정 내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를 위한 센서 설치
 -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응급호출, 통화기능 탑재)
- ③ 방법
 -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청
- ④ 문의
 - 소하노인종합복지관(☎070-5089-3254)

39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① 대상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② 내용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③ 방법
 -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④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

40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① 대상

- 등록장애인

② 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③ 방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④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

41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②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③ 방법

- 광명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④ 문의

- 취득세 : 광명시청 차량등록사업소(☎02-2680-6228)
- 자동차세 :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098)
- 행정안전부(☎044-205-3860)

42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 중복 장애) 장애인가구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② 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 원씩 3개월(7,8,9월) 지원
-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확인 → 시군구 급여지급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680-6957)

43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① 대상
 - 광명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 ② 내용
 - 관내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 원 이내 지원
 - 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사람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조건: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
- ③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장애인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수리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2~6618)
 -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02-899-1497)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680-2596)

44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 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경증 장애인가구
- ② 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도비/시비)
- ③ 방법
 - 사업기관: 장애인문화복지신문, 복지21, 경기복지신문, e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37)

45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① 대상 ▪ 등록장애인
- ② 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③ 방법 ▪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④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

46

각종 요금 감면이 필요할 때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① 대상 ▪ 등록장애인
- ②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③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④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

47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 ① 대상 ▪ 광명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 ② 내용 ▪ 각종 상담 및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③ 방법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 신청
- ④ 문의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02-2616-3700)

48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광명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① 대상 ▪ 광명시 거주 장애인 가족
- ② 내용 ▪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안정된 생활 촉진
▪ 가족관계 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 ③ 방법 ▪ 광명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신청
- ④ 문의 ▪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02-897-7076)

49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수어통역센터

- ①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② 내용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③ 방법 ▪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서비스 신청
- ④ 문의 ▪ 광명시 수어통역센터(☎02-892-1388)

50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① 대상 ▪ 등록장애인
- ② 내용 ▪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
- ③ 방법 ▪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에 신청
- ④ 문의 ▪ 밝은빛 장애인 주간보호센터(☎070-4510-3645, 목감로 120)
▪ 광명시립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070-4510-7601, 목감로 120, 1층(광명5동, 장애인복지타운))
▪ 광명사랑터(☎02-2060-0620, 광명로 823, 304호(광명6동, 현대타운))

51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체육시설

- ① 대상 ▪ 등록장애인 등
- ② 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③ 방법 ▪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④ 문의 ▪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02-2616-3700)

52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① 대상 ▪ 등록장애인
- ②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③ 방법 ▪ 지역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광명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02-897-1444)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자가용 자동차 관련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가족에게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가족지원

- ① 대상 ■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②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치료 등 장애아동 수요에 따른 다양한 재활 치료 서비스 선택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의 자녀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언어 치료, 수화교육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개별상담, 집단상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후견심판청구 비용 · 공공후견인 활동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인 발달장애 청소년	·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체험활동, 자조활동(월 66시간 이내)
광명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 장애인 가족 갈등 및 불편해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③ 방법 ■ 해당 기관

- ④ 문의 ■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02-897-7077)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589, 2596)

①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지적장애 및 뇌병변은 3급까지)
- 1~3급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사람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일시적 장애, 임산부 등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 교통이 어렵다는 전문의료기관이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 일시적 장애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전문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용 가능)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② 내용

- 신청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참고
상담원	6:00~22:00	6:00~21:00	관내: 당일신청 관외: 1일전 신청 (07:00~신청가능)
인터넷	24시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확인동의서, 장애인증명서(등급에 따라 필요서류 추가제출), 진단서(일시적이용자)
- 이용요금
 - 관내·관외 - 10km 1,500원, 5km마다 100원 추가
[유료도로(왕복포함)],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객 부담]
- 운행시간 연중무휴 365일/ 일일 24시간 / 사전예약제, 즉시콜 운행

③ 방법

- 전 화 - 대체교통수단신청: (02)2610-2000, 팩스(02)2688-6114
 특정차량(휠체어등): 관내,관외: 1666-0420
 문 자 - 010-2457-4588(전화금지, 문자만 가능)
 ※ 팩스 또는 문자 발송 후 (☎02-2610-2000)로 접수확인 필수
- 인터넷 -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④ 문의

- 광명희망카(☎02-2610-2000) ▪ 광명도시공사(☎02-2610-7300)

56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만성질환자 맞춤 재활서비스

- ① 대상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 19세 이상 주요 3대 만성질환을 받은 자
- ② 내용
 -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암, 당뇨병 등으로 운동장애가 있는 자에게 찾아가는 맞춤재공하여 신체기능 회복 및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 서비스가격(바우처/본인): 200천원
 - 1등급(수급자, 차상위): 180/20천원
 -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160/40천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140/60천원
 -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70% 이하)120/80천원
- ③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상담 · 접수 및 자격확인
- ④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2-2680-6601~6618)
 -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800)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02-2680-2028)